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2930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황○○
피 고 ○○도 ○○시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4. 4. 23.
판 결 선 고 2024. 6.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501,0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6.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8. 31. D과, D 소유인 ○○시 E 전 853㎡(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23. D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82477 호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기금은 2019. 10. 11. 원고들을 상대로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 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

다. 피고는 2019. 10. 14. 채납처분으로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위 압류에 관계 된 채납액은 지방세 108,349,970원, 가산금 8,920,390원 합계 117,270,360원이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20. 5.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을 '이 사건 집행법원')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는 2020. 8. 3.이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기금은 2020. 10. 23. 관련 민사소송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 5240073)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21. 2. 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에게 지급될 배당금에 대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단801839,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



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21. 7. 7. 말소되었다.

사. 이 사건 집행법원은 2021. 8. 12. 원고들에게 각 16,501,04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배당하려한 돈을 공탁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년금제7437호, 2021년금제7439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

아. ○○○○기금은 2021. 12. 22.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 76427)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D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 7. 확정되었다.

자. ○○○○기금은 위 판결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2022. 3. 14. 원고들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이 D에게 양도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이는 2022. 3. 15.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차. 원고들은 D을 대신하여 2022. 4. 4. ○○○○기금에게 D의 구상금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

카. ○○○○기금은 2022. 4. 14.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였고, 이는 2022. 4. 20. 대한민국에 통지되었다.

타. 원고 A은 2022. 5. 1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추가배당에 대한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파. 이 사건 집행법원은 2022. 6. 2.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추가배당을 실시하여 원고들은 제외하고 압류권자인 피고에게만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 을1~4(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있었으나 원고들이 ○○○○기금에 D을 대위하여 돈을 변제함으로써 ○○○○기금의 D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피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배당을 받음으로써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게 되었다.

이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므로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권자로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27 판결 참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그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61조를 유추적용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제기로 공탁된 배당액 중 그 소송 결과 근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부분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57699 판결 참조). 경매법원이 추가배당을 실시할 경우에 배당받을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이어야 하는데,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때에는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참조).

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담보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였다. 원고들이 ○○○○기금에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지만,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채무를 담보하는 권리가 아닌데다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시점이나 이미 말소된 시점 이후의 사유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다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추가배당은 이 사건 경매절차와 별개의 경매절차가 아닌 이 사건 경매절차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 A이 2022. 5. 13.한 배당요구는 배당요구 종기인 2020. 8. 3. 이후의 배당요구로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적법한 배당요구권자로서의 지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21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